천년의 빛 영광 Glory Yeonggwang

위대한(Great) 영광, 군민과 함께

영광군

옥당골소식

제565호

2022.12.20.(화)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목 차

I. 군정 소식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 3
2.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인센티브 받자! ····· 4
3.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6
4.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7
5.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8
6.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안내 ····· 9
7.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협조 ····· 11
8.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 13
9.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14
10.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15
11.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 16
12.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안내 ····· 17
13.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8
14. 보훈·참전명예수당 안내 ····· 20
15.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 21
16.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22
1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23
18. 치매 뇌(腦)인지강화 교구 대여제 운영 ····· 24
19. 치매예방 뇌(腦)청춘 건강교실 운영 안내 ····· 25
20.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 26
21.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 27
22. 산불예방 안내 ····· 28

목 차

II. 기타 소식

1.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유의사항 안내 ····· 29
2.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 운영 ····· 30
3.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3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지급기간**: 2022. 11. 21. 순차적으로

□ **지원대상**: 대상농지 및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농지)**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지급요건 8개 기준 모두 충족 시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100~205만원)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 소농직불금: 0.5ha 이하(세대 모든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 **지급규모**: 7,637명/ 24,375백만 원(국비) / 12,313ha

- (면적직불금) 5,191명, 21,442백만 원, 11,591ha
- (소농직불금) 2,446명, 2,933백만 원, 722ha

※ 문의사항: 영광군청 농업유통과(☎350-5383)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인센티브 받자!

상업시설, 개인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조건**

○ 참여자의 상업시설 또는 거주시설에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개별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참여자의 상업시설(가게)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참여대상**

○ 개　　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 상업시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상업시설(가게) 소유주

□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 감축 인센티브

구분	항　　목	감축률		
		5~10% 미만	10~15% 미만	15%이상
개인	전　　기	5,000	10,000	15,000
	상 수 도	750	1,500	2,000
	도시가스	3,000	6,000	8,000
상업시설	전　　기	20,000	40,000	60,000
	상 수 도	3,000	6,000	8,000
	도시가스	12,000	24,000	32,000

○ 유지 인센티브 및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구분	항 목	연속 감축자가 다음반기부터 0%초과~5%미만 감축 시		표준사용량의 50% 이내로 에너지 사용
개인	전 기	2회 이상 연속	3,000	5,000
	상 수 도		450	750
	도시가스		1,800	3,000
상업시설	전 기	4회 이상 연속	12,000	해당 없음
	상 수 도		1,800	
	도시가스		7,200	

※ 반기별 1회 지급, 1포인트 당 최대 2원

☐ **참여시 유의사항**

○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 확인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관리비 포함"으로 기입하고 관리비 담당자(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연락처 별도 기입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 신청: 영광군 **도시환경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고객번호(전기 필수), 거주 면적, 세대원수, 관리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방문요망

☐ **가입 후 개인정보 변경 시**

○ **반드시 변경사항 현행화**하여야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주소이전, 고객번호 변경, 계좌번호·연락처 변경 시**)

○ 변경방법: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또는 영광군 담당자에게 문의(061-350-4783)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1. 4. ~ 22. 12. 31.

☐ **지원대상**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녹비작물 종자 (ha당 공급량 기준)**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 **사업담당부서**

○ 영광군청 농업유통과(350-5383) 및 읍·면 산업개발부서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란?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지급하여 월 최대 9.5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유·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5~2018년생)

○ 지원기간: 2023년 1월~12월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9.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사 업 비: 131,100천원(기금 91,770, 도비 11,799, 군비 27,531)

○ 대상시설: 9개소

- 영광읍(7): 세계특공무술연맹극한체육관, 스마일요가, 영광검도관, 영광전남합기도체육관, 영광체육관(태권도), 영광헬스클럽, 채승곤 KO복싱 클럽
- 홍농읍(1): 용인대광명태권도
- 법성면(1): 서해태권도체육관

□ 지원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 이용권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스포츠산업과 및 각 읍·면사무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이용권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발급 및 강좌 신청
svoucher.kspo.or.kr		수급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군청 스포츠산업과		신한체크카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영광군 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실시를 공고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공고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영광군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 간: 2022. 10. 13.(목)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 내 용: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 의 처: 영광군 원예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350-4667)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안내

농업법인 관리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

□ (조사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21년 말 기준 법원 등기완료 및 '살아있는 등기' 상태인 농업법인

- 조사대상: 관내 농업법인 519개소

□ (조사기간) 2022. 9. 1.~12. 31.(4개월)

□ (조사항목)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1.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구분	조사항목
일반현황	소재지,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운영현황	운영, 미운영, 소재불명, 일반법인 전환
사업현황	사업범위(목적 외 사업 포함), 핵심사업
출자현황	농업법인 구성원 정보,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등
농지현황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현황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

□ (조사방법)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 담당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방문조사

□ (2022년 실태조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실태조사	2022년 실태조사
조사주기	3년 단위	정기조사 : 1년 단위 수시조사 : 필요 시
조사대상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농업법인 전수	법원에 등기되어 있고, '살아있는 상태'인 농업법인 전수
활용자료	등기부등본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	**<행정자료 추가>** 국세청 자료(매출액, 주주현황) 농지과 자료(농업법인 소유 농지) 국토부 자료(농지 거래내역)
조사순서	우선순위 없음	중점조사 대상을 우선 조사
조사항목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이관
후속조치	(신설)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및 농지처분명령

□ (2022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농업법인 관리 (2022.5.18. 시행)	실태조사	정기조사 (3년마다)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실태조사 주기 하위법령 위임
	후속조치	농업법인에 직접 청구	타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세자료 등)	해산명령 청구 시 타기관 자료 획득 가능
농업법인 운영 (2022.8.18. 시행)	설립·변경·해산	설립·변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	설립·변경·해산 등기 전 지자체에(시·군·구) 신고 의무 신설 설립·변경·해산 등기 첨부서류 추가 (지자체의 신고확인증)	법인 설립 전 시·군·구 사업범위 심사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해산청구 대상	부동산업 영위 - 해산명령 청구 후 과징금 부과	부동산업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과징금)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협조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나라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함

□ 영광군 전사순직 군인 통보 대상자

순번	군번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일	사망 구분	가족 관계	현 지 명 주 소	비고
1	0683849	박병호	1928-11-20	1955-03-03	순직	성순례 (처)	①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②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2	0655369	송한순	1927-02-16	1952-01-30	순직	김춘심 (모)	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	8838415	이석기	1929-05-08	1958-11-01	순직	이상옥 (제)	① 전남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4	0624570	정동준 경동준 정돈준	1926-03-20	1952-04-07	순직	경공현 (부)	①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② 전남 광양시 관서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1.5. - 묘비명 : 정돈준
5	9390811	김현규	1927-05-15	1953-09-16	순직	김만진 (부) 임덕순 (모)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6	9589645	최광복	1925-08-18	1954-03-14	순직	박용근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7	9970112	박홍수	1935-04-22	1957-11-07	순직	박균양 (부)	①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② 전북 고창군 무장면 만화리	
8	0657223	최기구 최기술	1926-02-08	1953-10-10	순직	최기록 (형) 최영록 (부)	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176	
9	9589790	김려순 김염순 김현순	1932-03-27	1953-11-23	순직	윤인한 (모)	①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②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③ 평북 용천 부라 원성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4.14.
10	9329376	김영환	1932-01-19	1957-05-05	순직	김점동 (형)	①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11	9589193	윤위섭 윤증섭 윤승섭	1928-06-01	1954-10-09 1954-11-09	순직	이원선	① 전남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② 함남 함흥시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4.24.
12	9673467	김동권 김점권	1928-09-10	1957-11-11 1957-11-12	순직	김문권 (형)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② 황해 옹진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60.5.25.
13	0656846	최병연	1930-06-03	1952-02-01	순직	최정덕 (부)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 군남면 오상 또는 오용	

순번	군번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일	사망 구분	가족 관계	현 지 명 주 소	비고
14	9616557	이문정	1924-04-17	1955-04-29 1955-04-30	순직	김종섭 (모)	①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 영광 남면 동윤 ②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7.9.21.
15	9337379	박이봉	1933-09-18	1953-07-20	전사	박을양 (모) 박대서 (조카)	① 전남 영광군 봉남 ②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108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0.31.
16	9354620	양구용	-	1953-04-03	순직	김영철 (모) 양관용 김영숙 (모)	① 전남 영광군 염산면 ② 전남 영광군 부산 용동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8.11.22.
17	9337385	오오차	1933-06-26	1953-01-18	순직	정미순 (모) 박창래	①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 현충원(서울) 안장 - 안장일 : 59.10.31. - 소속 : 1훈련소 - 군번 : 933385

□ 유가족을 찾았을 시

○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 042-550-7387, 042-550-7391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74, 044-200-7375

□ 전사순직 통보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받는 혜택

○ 보훈급여금 수급

구 분	배우자	부모	자녀
전몰·순직군경	166만 8천원	163만 8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월 34만 7천원 ~ 138만 7천원)
재해사망군경	116만 8천원	114만 7천원	

○ 국립묘지 안장 (본인 국립묘지 안장 및 배우자 합장)

○ 의료·양로 지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60% 감면
- 보훈요양원·민간요양시설 이용 시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 지원

(보훈지원은 ☎ **국가보훈처 대표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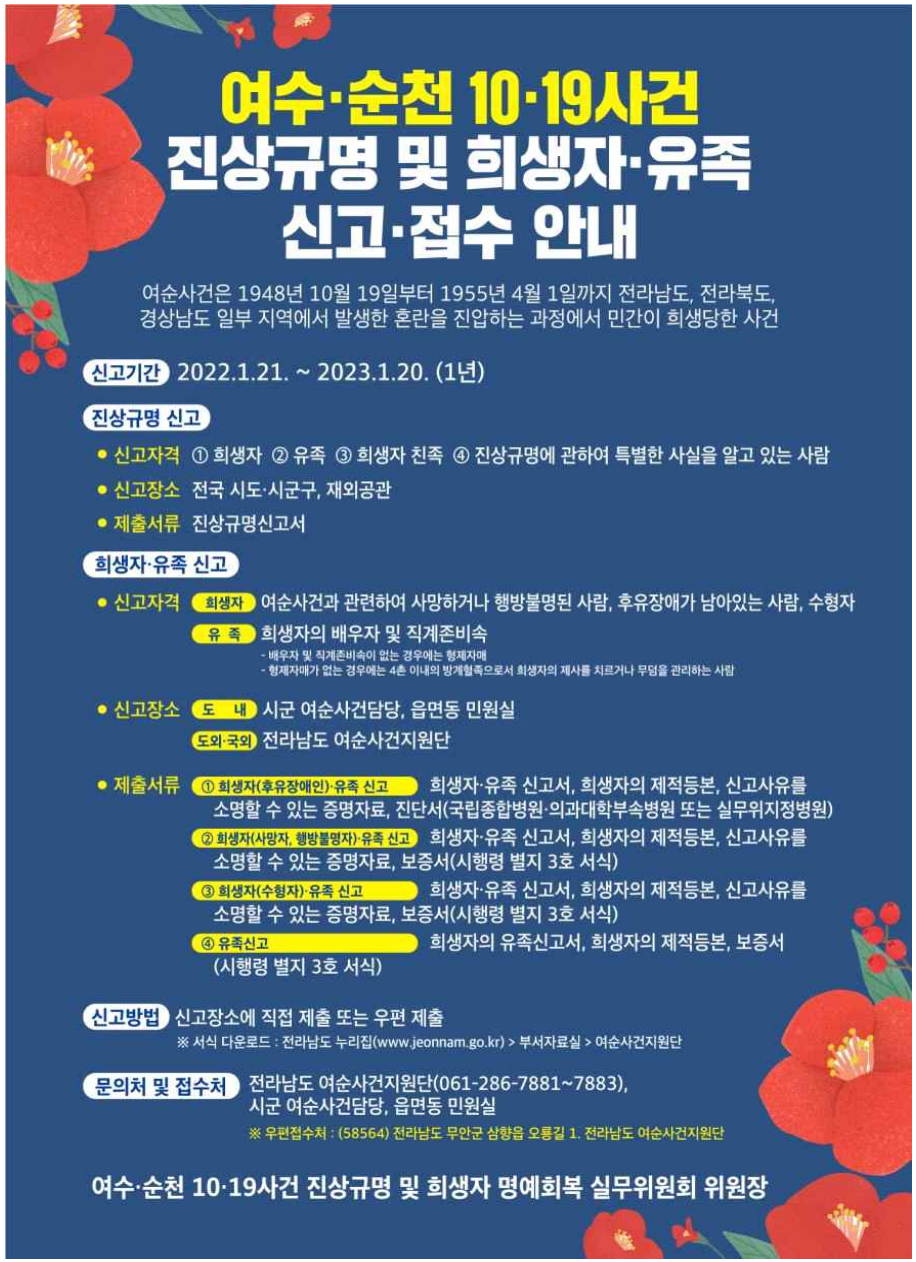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없음**

※ 다만,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요망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방 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신청인이 금융기관 직접신청) → 지원결정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67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만 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 영광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급불가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지원절차**

신청	▶	선정 및 신청자명단 통보	▶	축하금 지급 (매월 10일)	▶	지원실적 보고 (매월)
대상자 → 읍·면		인구일자리 정책실		인구일자리 정책실		군 → 도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성평등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영광군은 아빠의 육아를 응원 합니다! -

☐ 신청기간: 2022. 4. 6.~계속

☐ 지원대상: 남성 육아휴직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②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④「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영광사랑카드

☐ 사용기간: 장려금 수령 후 2년(24개월)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매월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최초 신청시, 휴직대상아동 변경 시)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월 단위로 발급)

☐ 기타문의: 읍·면사무소 및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061-350-5549)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안내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지원하여 국가수혜 사업신청 제척·건물보험 가입·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 **2022년도 사업분(100동) 접수기간:** 2022년 3월 22일~12월 31일

※ 사업기간/사업량 : 2022년~2024년(3년간)/총 300동

☐ **신청장소:** 종합민원실 주택팀

☐ **지원사항:** 건물도면 작성 및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 **신청가능대상: 건축물대장 미등록 무허가 단독주택(창고, 점포 등은 제외)**

○ **비도시지역의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주택으로 200㎡미만이면서 2층 이하**

- 토지이음 등 확인결과 해당 주소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도시지역 지정 이전 주택
- 대지안의 공지 및 건폐율 등 적법한 주택

※ 읍·면사무소에서 건물 재산세과세내역 등을 통해 신축년도 사전확인 후 상담

○ **토지 소유권 일치**

- 토지소유자와 불일치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지목이 전·답·임야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 대지 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거나 타 필지로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 신청불가

-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허가 없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불법건축물: 건축허가(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
  - 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의처:**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4682)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여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 **자진신고기간: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 담당

○ 신고서류: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시공업체 대행 가능)

구 분	제 출 서 식	구 비 서 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구 분	위 반 내 용	벌칙 · 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문의사항

○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문의(☎061-350-5486)

보훈 · 참전명예수당 안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군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신청권자: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유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자	비 고
영광군 보훈 명예수당 **(매월 7만원)**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영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8만원)**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영광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매월 5만원)**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매월 2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3만원)**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및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자

□ **문의사항: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5813)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치매예방, 등록, 상담, 조기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통합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 영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　　용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1·2/치매감별검사-협약병원 의뢰)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운영
- 치매안심마을 지정 유지 관리
- 치매 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 배회어르신 지문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보급: 기기 및 이용료 지원
  ·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 기저귀, 방수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쉼터운영 및 가가호호방문서비스
  ·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운영

□ 문　　의 :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817)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2층)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내　　용
- 만 60세 이상 1년에 1회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검사(1차, 2차)실시
- 진단검사 후 감별검사 필요시 협약병원(영광종합, 영광기독)의뢰

□ 진단검사비(감별)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검진장소 :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 지원금액 : 치매검사비 1인당 8만원 상한내 지원

□ 검진절차

선별검사	정밀검진 1차 (진단검사1)	정밀검진 2차 (진단검사2)	감별검사 (영광종합·영광기독)
신분증 지참 후 치매센터 방문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대상	정밀검진 1차 후 2차 전문의 진료 매주 수요일 13:00～17:00	혈액검사 및 뇌 영상촬영
무료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군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건강보험대상자 ※ 군비지원 시행일 : 2022. 1. 1.			건강보험 납입액에 따라 일부 지원

□ 기　　타 : 선별검사자 전원 치매사업 홍보물 제공(파스, 마스크 등)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5659, 350-480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치매안심센터(2층)
□ **대　　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 **군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한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금액: 치매 치료 약제비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② 처방전
③ 병원 진료비 영수증 - **군비지원**
④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약제비 계산서) - **군비지원**
⑤ 통장사본 1부
⑥ 행정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대리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내　　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이내**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대상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액 결정 소득기준 검토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비: 지원대상 확인	• 확인 후 30일이내 지급 ※ 군비지원시행일 2022. 1. 1.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691, 350-4826)

치매 뇌(腦)인지강화 교구 대여제 운영

치매 환자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가족의 부양 감소를 위해 가정에서 인지 교구를 활용한 활동 강화로 치매예방 및 중증화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기　　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　　소**: 치매안심센터(2층)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중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자
(치매환자,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자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 우선 배부함

□ 대여기간: 1개월간 (1회 한도 내 연장 가능)
□ 추진방법: 본인(보호자), 시설관리자 방문 수령 원칙
□ 준 비 물: 신분증, 인지강화 교구 대여 신청서 작성
□ 주요내용
- 인지강화교구 대여 및 방역 건강관리 홍보물 배부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교구: 자석칠교놀이 외 6종
- 코로나19 대응 건강관리 홍보물: 파스 외 1종
- 대여사업 홍보 및 사용방법 안내 등

□ 구성품목

인지강화교구(7종)	건강관리용품(2종)
자석 칠교놀이, 퍼즐(2개), 치매 가이드북(리플렛), 어른들의 추억 색칠하기(색연필 포함), 고리던지기, 볼트·너트 조이기, 기억건강 놀이책	파스(3매), 마스크(3매)

※ 인지강화활동 교구 품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350-4817)

치매예방 뇌(腦)청춘 건강교실 운영 안내

복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시키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

□ **기　　간**: 연중(월～금요일, 기수별 월 8회)

□ **장　　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보건기관 등

□ **대　　상**: 60세 이상 지역주민

□ **수행인력**: 외부강사 및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 **내　　용**

-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 안내
-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리 및 예방교육
- 치매예방 인지활동 워크북 활용 인지학습 교육
- 소근육 동작 활동을 위한 치매예방 공예치료
-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 등 운동치료
- 치매예방 집중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 뇌에 좋은 영양식 만들기 체험활동
- 치매예방수칙 3,3,3 , 치매예방 및 뇌 건강 체조(동영상)
- 전·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절차**

- 치매예방교실 운영 신청 상시 접수(최대인원 20명)
- 치매안심센터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경로당 우선 선정 (기존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후 순위)
- 치매예방교실 운영 확정 후 및 프로그램 운영

□ 문　　의: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806, 350-5098)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2층)

□ **대　　상** :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 홍보 가능 개인사업자

-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내　　용**

- 개인사업장(슈퍼, 미용실, 세탁소)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온 · 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 **주요활동**

- 치매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 치매관련 정보 제공(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 배회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
- 치매안심가맹점 안내판 게첨 및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지원 등

□ **준 비 물** :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350-4998)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실종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와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기　　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대　　상** : 만 60세 이상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

□ **내　　용**

- 배회감지기 대여 및 가입비 등 사용료 전액 지원
- 경찰서 시스템과 연계한 치매환자 지문, 사진 등록
- 배회가능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지원 등

※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청 실종신고 ☎112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2,3)
-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 코드가 표기 된 처방전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25)

산불예방 안내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 야영 · 흡연**을 하지 맙시다.

논 · 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 논 · 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기는 **봄철 미세먼지, 산불발생 주요 원인**입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영광군 산불대책본부(061-350-5351), 읍 · 면사무소(산업개발팀), 119,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낸 산불도 강력 처벌대상

○ **벌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주변 소각할 경우**: **1차적발 30만원, 2차적발 40만원, 3차적발 50만원** 과태료 부과
- 산림 인접지 외 논 · 밭에 불 놓다 소방차 출동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 061-350-5351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유의사항 안내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 기부행위 금지·제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22. 9. 21. ~ 2023. 3. 8.

○ **조합장**

➠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2 기타 금지·제한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4 신고 포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 지급

위반행위 신고 ☎ 061-351-2172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 운영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란?】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접수 받아 신속히 지원해 주기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제도

□ 운영개요

○ (운영시간) **연중 24시간 운영**

○ (전화번호) 도 대표 민원전화 **120번 → 내선 ①번** 위기지원

○ (이용대상)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주민 등 누구나

* 질병, 체납, 단전·단수·단가스, 고용, 주거, 장애 등 위기상황

○ (이용방법)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전화 주세요!

- **① 연 락 (☎120번을 누른 후 안내멘트에 따라 ①번 누르기)**
- **② 상 담 (콜센터 상담사와 기초상담 및 위기가구 등 신고)**
- **③ 연계·지원(도·군 관련부서 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제공)**

○ (상담내용)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복지급여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상담 및 지자체 연계

첨부 1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안내 포스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